



가정상담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 상담소의 2017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가 지난 11월 15일 열려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27면)



◁ ▽ 본소에서는 11월 16일 서울시와 함께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및 실무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 12일에는 숙명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교사를 대상으로 『법률구조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련기사 27면)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집 |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방향 심포지엄 ②
- 16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④
- 18 • 가정폭력상담실
- 22 • 인터넷 상담
- 23 • 좋은 책
부자동네보고서
- 24 • 결혼과 인생(178) 영화이야기
엘리자의 내일 _ 김용언
- 26 • 상담소 소식
- 30 • 지부 소식
- 32 • 상담통계
- 33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이 달의 메시지

평화, 멀지만 가야할 길

.....
가정의 평화가 사회·국가 평화의 근간이라면
사회와 국가의 평화는 가정 평화의 울타리가 됩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만인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 등 빈민하는 이웃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인권을 회복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랜 경험을 통해 가정의 평화는 곧 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얻은 상담소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데에도 목적을 둔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설이념

상담소의 창설이념을 다시 한 번 찬찬히 읽어 보았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사회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가정이 곧 사회와 인류의 근원이며, 가정이 평화로울 때 사회와 인류의 평화도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즉 가정이 평화로워야 사회가 평화롭고, 사회의 평화가 지켜져야 가정의 평화도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 사회에 던져지고 있는 무수한 과제들을 생각해 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북핵위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위기

상황들이 사회와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사회의 근본질서가 무너지고,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전쟁의 상황이 일촉즉발인 듯 여겨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인 자연재해가 우리를 덮친다면 우리 가정이 평화롭기는커녕 그 형태마저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고 전통과 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향해 조금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수능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사태에 대처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위기상황은 상부상조의 마음으로 극복하면서 사회적 일체감을 강화할 수도 있고 일부 부실한 건축이나 부실한 시스템 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핵위기를 둘러싼 논쟁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불과 두 세대 전에 참혹한 전쟁을 겪은 우리입니다. 모든 것의 파괴를 ‘한강의 기적’으로 극복했다지만,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이산가족의 비극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며 지금 다시 전쟁을 반복한다면 그 때 잃은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잃어야하며 오늘날과 같이 회복하는 것은 어쩌면 영영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온 몸으로 겪은 세대들 가운데 일부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은 용감하고 정의로운 일이며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비겁하고 복측에 동조하는 일이라는 사회 일부의 기류는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방증입니다. 평화야말로 모든 것의 근본이며 정의입니다. 평화로운 사회에서 가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울 수 있으며, 그래야 미래를 약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생각하는 상담소는 그것의 울타리가 되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평화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회적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 평화를 지키고,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 가정과 사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2017년 12월에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특

집

20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III ②*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방향 (2)

토 론 문

아동의 복리의 관점에서 본 친권의 공백과 미성년후견의 개시

박 인 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탁가정보호는 적절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보통의 가족관계와 가장 유사한 양육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아동보호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연을 벗어난 가족 형성의 다양화라는 관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합니다. 위탁가정보호가 아동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본래의 제도 목적과 그 강점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용 교수님이 제기하신 미성년후견 개시와 관련한 보호의 공백은 비단 위탁가정보호제도를 넘어서 요보호 아동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김상용교수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행방불명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어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된 부모를 수색하여 친권상실이나 정지의 재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요보호 아동의 실질적 보호필요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고식(姑息)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김상용교수님이 과거의 판례, 미성년후견 개시와 관련된 여

* 지난 11월 3일 열린 본소의 2017년 세 번째이자 창립 61주년 기념 심포지엄으로,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제반 입법과정에 앞장 서온 본소에서 위탁가정에 대한 법과 정책에서 더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짚어 보았다. 이 심포지엄에 발표된 주제발표와 토론문을 2회에 걸쳐 소개하는데 이번 호에는 토론문을 요약하여 실는다. 지면관계 상 각주, 참고문헌은 생략하였다. 전문은 본소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에서 볼 수 있다.

러 관련 법 규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법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해주셨습니다. 김상용교수님의 이번 발표로 법원의 위와 같은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건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법적 보호자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의 상실이나 정지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미성년후견 개시를 거부하는 법원의 태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미성년후견을 개시하는 것이 친권과 후견이 충돌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는지 또는 친권자의 권리를 적절한 절차 없이 박탈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행방불명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친권을 행사하면서 그 부적절한 행사가 문제되거나 언제든 행사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와는 달리 친권과 미성년후견이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부모가 아동에게 돌아와 친권의 행사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미성년후견의 종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 친권 제한의 불이익을 초래함에도 그 부모에게 적절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친권의 제한과 미성년후견의 개시에 있어서 핵심적 가치 척도는 아동의 복리이고 이에 대하여 친권자의 절차적 권리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있든 없든 현재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있고 그것이 단기간 내에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면 미성년후견은 즉시 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미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권자의 존부가 아니라 현재의 아동보호의 필요성이고 그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는 친권의 박탈 또는 정지 재판과는 관계없이 미성년후견 개시심판의 절차에서 충분히 심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친권자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미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김상용 교수님의 민법 개정시안 제928조 제2항은 위와 같은 현행법 및 그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에 의하여 초래된 요보호 아동의 법적 보호의 공백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한 입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김상용 교수님의 민법 개정안(제924조 제1항)에서는 친권의 성실 및 정지 청구권자로서 새롭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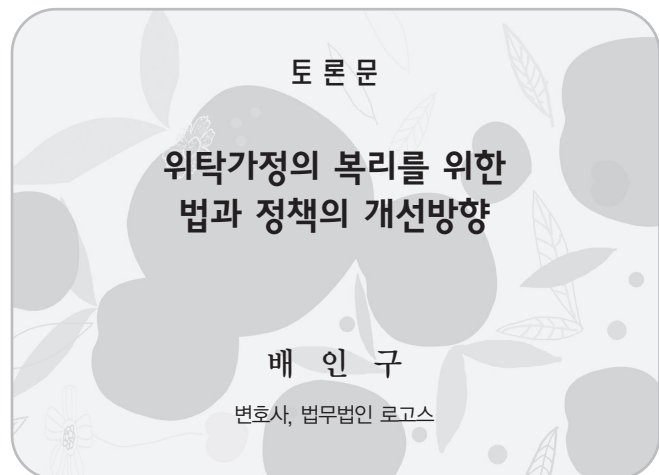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친권의 상실 또는 정지 사유가 있더라도 현대 가족관계의 변천과 개인주의적 생활방식에 비추어 친족 혹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부모를 상대로 친권의 상실이나 정지를 청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사법에 있어서 공익의 대표자로 종종 청구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검사’는 사안이 형사사건화 되지 않는 이상 검사의 인지나 개입을 기대하기 어렵고 형사건의 경우에도 종래의 경험에 비추어 검사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도 문제의식이나 전문성의 부족 또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꺼려할 개연성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등 친권 남용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친권의 상실이나 정지에 관한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학대 아동의 보호 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개정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미성년후견인으로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아울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제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가정위탁 보호지원법에서는 미성년후견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안되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적으로 후견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결국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를 후견인으로 선임한 것과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정 민법에서 미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법인후견인 선임 배제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입법 제안입니다. 개정 민법에서는 성년후견인등에 대해서는 법인후견인을

인정하였으나 미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법인후견인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 개정안의 입안자는 이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보호 양육에서 있어서 정신적 심리적 유대 형성의 중요성이 거론되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있어서도 성년후견인이든 미성년후견인이든 자연인 후견인을 우선하고 자연인 후견인에 의한 후견사무 처리가 부적당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저는 미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인과 달리 법인후견인이 반드시 부적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법인후견인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적합한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후견목적신탁과 같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요청되고 미성년후견인으로서의 신상보호와 관련한 보호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상보호는 특히 피후견인 당사자의 생활환경, 본인의 의사와 선호에 대한 존중 등 아동의 복리와 관련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성년후견인으로는 오히려 위탁가정의 부모와 같이 생활을 같이 하는 분으로 선임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만 다른 제3자 후견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친권의 경우에도 이혼시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혼 후 자녀 양육과 관련한 부모의 역할 분담 혹은 자녀와의 유대의 지속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가능하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위탁가정의 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의 선임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득이 제3자 후견인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결국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장보다는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절한 후견인 후보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후견이 개시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발표문 내용과 같이 우리는 이 규정을 친권자가 사망하였거나, 친권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연유로 단독친권자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상황을 2011년 이른바 ‘최진실법’ 개정시 법문에 반영하였다는 교수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민법 제928조의 “친권자가 없는 경우”를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좁혀서 봐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굳이 친권자가 없는 경우라고 법문을 제정할 이유가 있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친권자가 없는 경우는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¹⁾

이른바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을 통해 입법자는 단독친권자의 유고시 다른 일방의 친권이 자동부활 되는 것을 금지하되,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으로도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심지어 이때에는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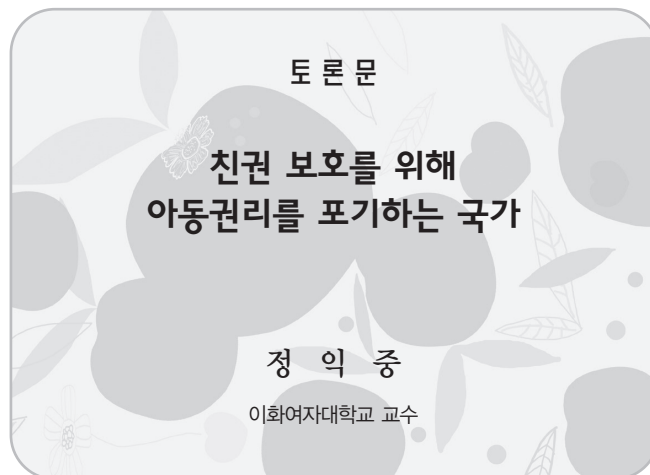
친권자로 지정을 못 받았던 부모에게 친권상실선고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의 개시가 미성년 자

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면 미성년후견이 개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멀쩡하게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있어도 미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미성년후견이 개시되어야 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와 다른 결정이 나왔다면 이제 친권에 방치되어 있는 위탁아동을 위해서는 소재불명의 경우에도 후견이 개시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교수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청구권자의 범위를 넓혀 친권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미성년자들, 특히 위탁아동이 없어야 한다는 교수님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탁아동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위탁부모가 후견인으로서 법률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모든 위탁부모들이 위탁아동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위탁부모에게 학대받는 위탁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법원이 감독할 수 있는 미성년후견감독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행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현재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와 같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미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위탁 보호기간 평균은 6년 이상이며, 2016년 기준 종결사유는 ‘만 18세 이상 종결(31.5%)’ 과 ‘보호연장 종결(37.3%)’ 이 ‘친가정복귀(16.0%)’ 보다 훨씬 높았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7). 즉, 아동을 단기간 보호함으로써 친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가정위탁의 본래 취지와 달리 위탁기간이 점차 장기화되고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을 위탁가정에 맡긴 친부모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양육의 존감이 생길 수 있고 아동에 대한 애착이 감소되어 연락을 두절할 수 있다(오정수, 정익중, 2017). 그러나 미성년인 위탁아동의 경우 다양한 법률행위에 친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부모는 법률대리권자인 친부모의 연락두절, 소재불명으로 교육, 행정, 금융 등 일상생활에서 아동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가정위탁에서 친권공백이나 위탁부모의 법적권리 부재 때문에 공문서 발급, 의료적 개입, 금융업무 처리, 개별보험 가입, 휴대전화 개통 등의 어려움이 있어(강현아, 정익중, 2015) 보호대상 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

-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928조의 영문번역본을 찾아봐도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기재되어 있다.

Article 928 (Commencement of Guardianship for Minors)

Where there is no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over a minor or where a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is unable to exercise all or part of his/her parental authority under Article 924, 924-2, 925, or 927 (1), a guardian of the minor shall be appointed. <Amended by Act No. 12777, Oct. 15, 2014>

현재, 친권자 부재로 인한 문제의 해결방법은 민법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방법이 유일하지만, 그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여 위탁부모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후견의 개시는 친권의 소멸을 전제하는데 친권자가 연락두절,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후견을 개시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또한 모든 위탁부모가 법원을 통해 미성년 후견인 선임이 적절한지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모든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하지만 친부모의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으로 장기간 위탁해야 하는 경우는 후견을 시작하기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전에 먼저 일상생활의 어려움부터 풀어주어야 한다.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의해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지침 4호)'는 적용범위에 한계가 많아 일부 단순 증명이나 단수여권 발급 등에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위탁부모에게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정익중, 2017). 위탁부모의 법적 대리인 권한을 부여하여 어린이집·학교 등 행정처리 및 일상의 보호자 동의권, 통장 재발급 및 신규 개설, 복수여권 발급, 바우처 이용, 휴대폰 개통 및 혜택 등을 원활히 하고 위탁아동 양육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보호대상아동의 더 안전한 보호를 위해 친권의

공백을 방지하고 위탁부모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두가지 트랙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보호조치 기간 내 연락 유지 및 법적 대리권 행사 이행 의무 등 위탁아동 친가정의 책임 및 이행 의무 강화할 필요가 있다(정익중, 2009). 둘째, 김상용 교수님 주장대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1년 등 일정기간 이상 연락두절이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친권을 정지하거나 상실시켜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안을 더 손쉽게 하는 것이다. 친부모가 보호할 수 없다면 국가가 후견인이 되어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가가 친권을 보호하는데 급급해 보호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친권과 후견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 「민법」을 통해 친권의 제한 및 정지가 가능해졌으나 이를 보호대상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그들에게 발생하는 친권공백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존재한다. 즉,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민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김상용 교수님이 주장하신 「민법」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의 일시정지나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반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민법」을 보호대상아동을 초점 맞춰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누가 후견인으로 적절한가?

대안으로는 「아동복지법」 제18조(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등)에 항을 추가하는 개정을 들 수 있다. 즉, 시설입소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조치 기간 동안 친권을 정지시키고 후견인 선임을 하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 2016년 3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8조 2항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아동복지전문기관 등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다면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행사의 제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개정 「민법」에서 확립적 후견인 선임 규정이 없어져 친족이 아니라도 아동의 복지 차원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여전히 ‘누가’ 가장 적절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하는 문제가 남는다. 가정위탁지원센터장 등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으나 이 제도가 만약 적극적으로 이용된다면 실무자들이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아동의 재산관리권, 법정대리권도 귀속되므로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정위탁의 경우, 부모가 친권을 유지하면서 위탁부모가 양육에 대한 친권 내용을 대행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김상용, 2007). 그러나 위탁부모가 임시적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모가 없는 고아나 고아아닌 미성년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자동적으로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위탁아동의 경우는 이 법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가정위탁도 시설과 준용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그 후견인을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이 할지 위탁부모가 할지는 고민해볼 영역으로 판단된다. 둘 다 여의치 않을 때는 가정위탁 내 후견인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법인후견인 제도와 보조금부 후견인제도(subsidized guardianship)가 제안되었는데(강현아·정익중, 2015) 둘 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민법」의 성년후견인제도에서 활용하는 법인후견인 제도를 보호대상 아동에게 적용(김상용, 2011; 박주영, 2010)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제안해볼 수 있다. 법인후견인제도(「민법」 제930조 3항, 2011년 개정)는 자연인이 아니더라도 법인이라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권재문, 2015). 보호대상아동에 한하여 법인 후견인을 가능케 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비영리 아동복지 전문 NGO에서 구성한 법인이 법인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성년후견법인은 주로 보수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아동복지 체계에서 법인에게 보수를 준다면 국가가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입법이므로 현실적으로 개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강현아·정익중, 2015).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한 장기친족위탁에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조금부 후견인제도(subsidized guardianship)를 적용해볼 수 있다(권재문·강현아, 2014). 보조금부 후견인 제도는 미국에서 친족에 의한 입양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Geen & Berrick, 2002; Testa, 2002). 이 후견인 제도를 통해 가정법원에서 친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친족이 친권자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며, 미국에서는 입양과 동일한 영구적 배치(permanency)를 성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나 모니터링은 종결된다. 양육자-아동 간의 관계에 대한 영속성과 관련하여 후견인제도가 입양보다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으나 후견인 관계의 취소율이 입양의 파양에 비해 더 높다는 통계는 아직 없다(권재문·강현아, 2014). 보조금부 후견인제도는 여러

장점이 제시되었는데, 우선 친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덧붙여, 입양을 하면 위탁부모로서 지급받던 양육수당이 끊길 것을 우려하여 입양을 꺼리게 되는 저소득층 위탁부모의 경우 후견인이 되면 양육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장점도 있다. 보조금부 후견인제도는 가정위탁제도에 비해 제도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관리, 자격증 수여 과정 등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Testa, 2002).

그러나 보조금부 후견인제도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간단한 절차만으로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보조금부 후견인제도로 인해 입양을 고려했던 친족의 입양을 방해할 수도 있고, 기관의 슈퍼비전이나 모니터링의 부재를 초래하여 아동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Takas & Hegar, 1999).

가정외보호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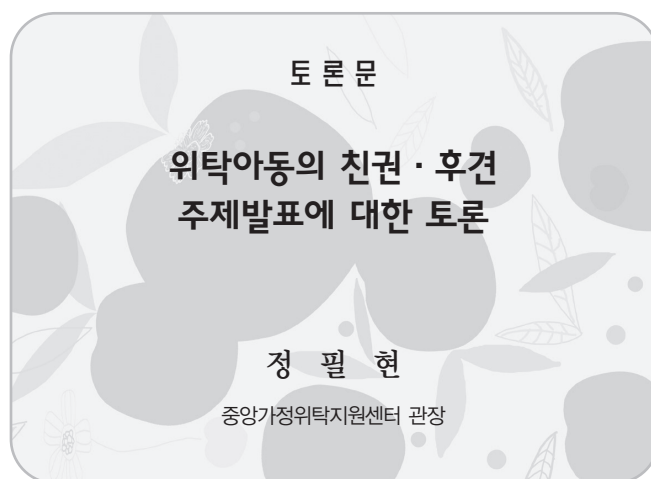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가정외보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동의 친가정분리 자체를 최소화하는 예방적 차원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에 대한 가정외보호 조치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학대와 같이 분리가 꼭 필요한 경우 외에도 이혼이나 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가족복지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다면 가정외보호까지는 필요 없을 이유들이다. 따라서 국가는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친가정지원을 위한 여러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률적 조치 혹은 지침과 같은 공식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동이 최대한 자신의 친부모와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집중적인 친가정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아동수당, 집중적인 가족보존서비스 등을 통해 가정해체를 막고 가정외보호 자체를 예방하여 친부모가 가정내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익중, 2009, 2017; 강현아·정익중, 2015). 이는 드림스타트센터,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여러 취약 가족 형태를 위한 가족복지체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노충래·우석진·정익중·강현아·전종설,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가정에서 분리된다면 가능한 빨리 친가정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오랫동안 복귀할 수 없다면 가능한 빨리 친권과 관계 없이 후견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 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아무리 권리를 가졌더라도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자는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법으로도 그 권리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친권에 쓰는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친권을 보호할 이유가 무엇인가? 친권 때문에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단지 생물학적 친자관계만으로 친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전근대적인 사고가 아닐까 생각된다.



“대구가정법원 항고심 기각... 후견과 친권이 충돌할 염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의 주장은 누구를 위한 것이기에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청구기각 되었을까?

후견과 친권의 충돌염려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염려인가?

입양의 경우에도 민법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에 의하면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1항에 명시되어 있다.

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한, 2항에는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입양에 있어서 민법은 친생부모의 권리보다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우선으로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가정위탁보호에 있어서는 아동의 복리와 권익보다 친생부모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것처럼 해석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친권자를 찾아 친권을 행사할 의사 여부를 묻는 과정도 생략된채 결정된 판결이 과연 아동복리를 위한 재판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권리는 책임과 의무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남용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친권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것 역시 포함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할 수 없게 된 경우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녀

를 위한 복리에 반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의 권리유지를 우선시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하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에서는 1항(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과 2항에(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1.5.19.>)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친권행사 역시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민법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친권은 이렇듯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법이 추구하는 대로 따른다면 해석과 적용의 차이가 다소 있다하더라도, 가정위탁 아동이 양육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복리의 공백이 주어져서는 않된다는 본질은 변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해석으로 인한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위탁아동의 복리에 공백을 유지시키는 결정을 초래하게 했다.

이러한 결정은,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순간부터 복리의 공백이 함께 시작되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제발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으며,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에서는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

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4.10.15.>

행방불명, 연락두절등의 이유로 친권자와 연계도 안되고, 후견인도 선임되어 있지않은 아동은 병원에서의 수술동의, 휴대폰 개통, 아동명의 통장개설, 여권발급 등 가장 기본적인 아동의 복리뿐만아니라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학교등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역시 아동들이 겪는 불편사항에 포함되어 나타나고 있다.

○가정위탁아동 정책제안 사례

(친부모의 연락두절, 아동들에게는 끊임없는 상처)

● 복수여권 만들어 주세요. (복수여권 발급 불가)

고등학교 1학년, 전교생이 가는 중국 해외연수를 가기위해 6살 때 집을 나가신 친어머니를 실종신고 해야만 했습니다. 실종신고서를 제출해서 겨우 단수여권을 발급 받았으나 몇 개월이 지나고 친어머니 측에서 실종신고 사실을 알고 연락이 와서 무척이나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위탁아동 전○○)

아이가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발급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위탁부모의 신원보증으로는 단수여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돌보는 아동 중 한 명은 친부모가 발급신청을 해줘 복수여권을 발급받았지만 다른 한 명은 위탁모인 제가 신청해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인데 발급된 여권이 다르니 아이들에게 미안해 견딜 수 없습니다.

(위탁부모 사○○)

제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는 탁구를 굉장히 잘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하는 국제 친선대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몇 개의 나라를 돌며 대회가 진행되는 경기였어요. 단수여권밖에 발급되지 않는 현실에 아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탁구선수로 국제대회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 차라리 1차전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위탁부모 강○○)

● 장학금 받아도 쓸 수가 없어요. (금융거래 불가)

올해 초,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우체국 꿈보험 장학금'을 추천받아 장학생에 선정되었어요. 하지만 장학금을 찾기 위해 분실한 통장을 재발급하려고 하였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친아버지는 연락이 닿아 은행에 찾아가보셨지만 친권이 어머니에게 있다며 아버지의 동의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지금까지도 장학금을 찾지 못한 채 성인이 되기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이에요.

(위탁아동 전○○)

보험가입도 어려워요. 미성년자 당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친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보험가입도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는 성인이 된 후 보험을 가입했지만, 친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된 많은 위탁아동들은 보험가입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탁아동 이○○)

-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어서 시작한 가정위탁,
친부모가 없으면 생활이 안돼요.**
(전학동의, 핸드폰 개통 및 요금감면혜택에서의 차별)

초등학교 때, 집안 사정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학도 친부모님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락이 가능한 아버지가 전학을 위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친권이 어머니에게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위탁아동 전OO)

가정위탁보호가 되기 전에 제 명의의 2G폰을 개통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어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위탁아동 이OO)

위탁아동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공식적으로 핸드폰 개설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많은 아동들은 위탁가정의 다른 구성원이나 타인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리적인 불편감을 초래하거나 각 통신사의 연령별 요금제 사용, 요금감면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탁아동 이OO)

가정위탁 정책제안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어느 위탁아동은 토론중에 “국가에서 나에게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을 갖게 해준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라며 위탁부모도 일시적이지만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권한을 갖는건 너무 당연한거 아니냐라는 의미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탁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친권자이든 후견인이든 누군가는 위탁아동의 권익을 위한 양육의 권한을 가져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주제발표를 해주신 김상용교수님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함께 가정위탁아동의 기본적인 권익보장을 위해 가정위탁보호지원법안 입법발의 및 아동복지법 개정을 함께 진행하였고, 지금은 위탁아동의 권익 및 더 나은 양육환경마련을 위해 위탁부모님들과 후견인선임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소요되는 기간(약 6개월~1년)도 길고, 위탁부모에 대한 심문, 가정조사 등 부차적으로 입증해야할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위탁부모님들이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친권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친권상실, 정지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내는 친권자들이 다수라는 것도 보게 되었고, 법원의 판결 역시 친권상실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친권은 자녀를 위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친권이행에 대한 의무이행자로서의 친권자의 모습이 우리 한국사회에는 더욱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동복지에 초점을 둔 민법개정,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보호아동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더 나은 터전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④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가정법률상담소의 창립 (4)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꾸다

1966년 8월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꾸고

가족구성원 모두의 권익을 위한 인권기관으로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이 되다

가정법원의 개원을 계기로 내담자들이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상담소 활동의 확대와 능률화의 필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상담소는 우선 가정법원 부근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계획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여건에 맞는 주변 건물도 마땅치 않고, 비용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이태영 소장은 자신이 조정위원으로 있는 가정법원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여 몇 차례 상의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상담소와 가정법원은 서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법원은 당시 사용하지 않고 있던 서소문 가정법원 구내의 관사를 상담소에 빌려 주기로 결정했다.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가정법원이 개원하고 1년이 지난 1964년 11월 초순, 상담소는 법원 구내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관사의 온돌방 두 개를 상담실로 만들고 부엌 옆 마루를 대기실로 쓸 수 있도록 개조했다. 그리하여 그달 11일에는 4년 반 동안 사용하던 태평로 사무실에서 가정법원 구내로 이사했다. 그리고 1966년 8월 10주년을 맞아 상담소는 창립 때부터 써오던 '여성법률상담소'라는 명칭을 '가정법률상담소'로 바꾸면서 법무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사실상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상담소 개소 이후 처음에는 거의 여성들만이 상담소를 이용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들도 상담소를 찾기 시작했고 상담소측은 '여성법률상담소'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가정문제로 고민하는 남성들의 상담요구에 응해왔던 것이다. 남성 내담자 수는 초기에는 일 년에 불과 수명에 그쳤으나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전체 내담자 수의 22%를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그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었다. 따라서 상담소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가정문제에 관한 법률상담 활동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검토하던 끝에 '가정법률상담소'라는 이름을 채택하게 되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설이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만인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 등
 번민하는 이웃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인권을 회복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랜 경험을 통해
 가정의 평화는 곧 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얻은 상담소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데에도 목적을 둔다.

가정 폭력 상담실

행위자 상담



이해하고 배려받기 혹은 배려하고 이해받기가 서로 이어지도록 해야

사건번호 2016버1*** 상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1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7회, 부부 교육강좌 6회, 부부집단상담 8회,
부부캠프 1회 등 총 25회 실시

상담기간

2017. 1. 24. ~ 2017. 7. 21.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혼인한 지 37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남(37세, 36세)이 있다. 행위자가 15년 전 외도한 사실로 피해자가 행위자를 불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부부는 평소 지속적인 갈등관계 속에 있었다. 2016년 4월 사건 당일, 행위자는 피해자가 여자문제를 의심하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고 다투다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부분을 베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

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 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초상담시 피해자는 행위자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서 자신과는 각방을 쓰는 등 성적으로 멀리 한다고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면서도, 행위자와 잘 살고 싶고 감정적, 신체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부부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15년 전 외도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그 후로는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며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의심과 폭력을 중단하기를 원했다. 이에 서로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과제를 부과하고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부부가 약속한 대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갈등이 많이 줄게 되었다.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신경 쓰다 보니 싸울 일이 적어졌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조심하고 긴장감 속에 살다보니 덜 싸우게 되었다고 하였다. 부부가 서로 언행을 조심한 결과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변하게 된 것이다.

종결상담에서 피해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궁극적으로 자신도 상대방으로부터 이해받고 배려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고 했다. 또 상담 중 배우자를 불쌍하게 보라는 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데, 행위자를 불쌍하게 보니 갈등의 소지가 많이 줄었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행위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찾았고, 궁극적으로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 상담기

간 중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으며, 향후 폭력 재발 가능성도 미흡하다.

사건번호 2016버 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1회,
 교육강좌 1회, 부부집단상담 5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3회
부부상담 1회, 부부집단상담 3회, 부부캠프 1회 등
총 28회 실시

상담기간

2016. 11. 21. ~ 2017. 7. 24.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재혼한지 1년 2월 되었으며, 각 성인이 된 전혼자녀가 있고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2016년 8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행위자의 월급을 인출하여 친정식구들과 휴가를 다녀온 문제로 다투던 행위자는 피해자가 이어폰을 낀 채 자신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데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침대 위로 미는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초상담에서 행위자는 피해자가 과거 남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갈등요인으로 꼽았고, 피해자도 자신에게 폭력을 하였지만 부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자신만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부부가 함께 상담받기를 원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음주문제와 의처증을 갈등원인으로 꼽았지만 행위자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인정하면서 혼인을 유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은 상담을 받을 의사가 없고 행위자만 상담을

통하여 화를 조절하고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일에 이유 없이 결석하거나 통원치료를 이유로 결석하는 등 상담에 불성실하였으며,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하였으니 상담처분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법원은 행위자의 불성실 상담을 이유로 보호처분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호처분 연장 결정 즈음, 피해자에 의하면 행위자가 전에는 자주 이혼을 언급하였는데 부부관계가 개선되어 향후에는 이혼하지는 말은 하지 않기로 다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갈등원인이었던 음주와 의처증 문제도 이전보다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보호처분 연장 결정 후 행위자는 상담에 성실하게 참여하였고, 피해자도 부부집단상담에 3회 참석하고 부부캠프에도 참석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행위자는 부부집단상담 초기에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어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부부갈등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였으나 후기로 가면서 피해자와의 성격 차이를 이해하고 피해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행동하여 부부관계가 개선되는 변화를 보였다. 예를 들면, 집안이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행위자는 정리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잔소리하거나 시비하는 대신 직접 정리하는 행동을 실천하였고, 이러한 행위자의 행동 변화를 보고 피해자도 이전에 비해 유연해지고 행위자를 존중하게 된 것이다. 또, 행위자의 의심이 줄어 피해자도 마음이 편해졌고 부부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되었다. 행위자의 폭력성행이 교정되었고 부부관계도 개선되었다.

사건번호 2016버6**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1회, 음주문제상담 6회,
부부집단상담 1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4회,
 교육강좌 1회, 음주문제상담 4회,
 부부상담 2회, 부부교육강좌 2회, 부부집단상담 6회,
 부부 캠프 1회 등 총 34회 실시

상담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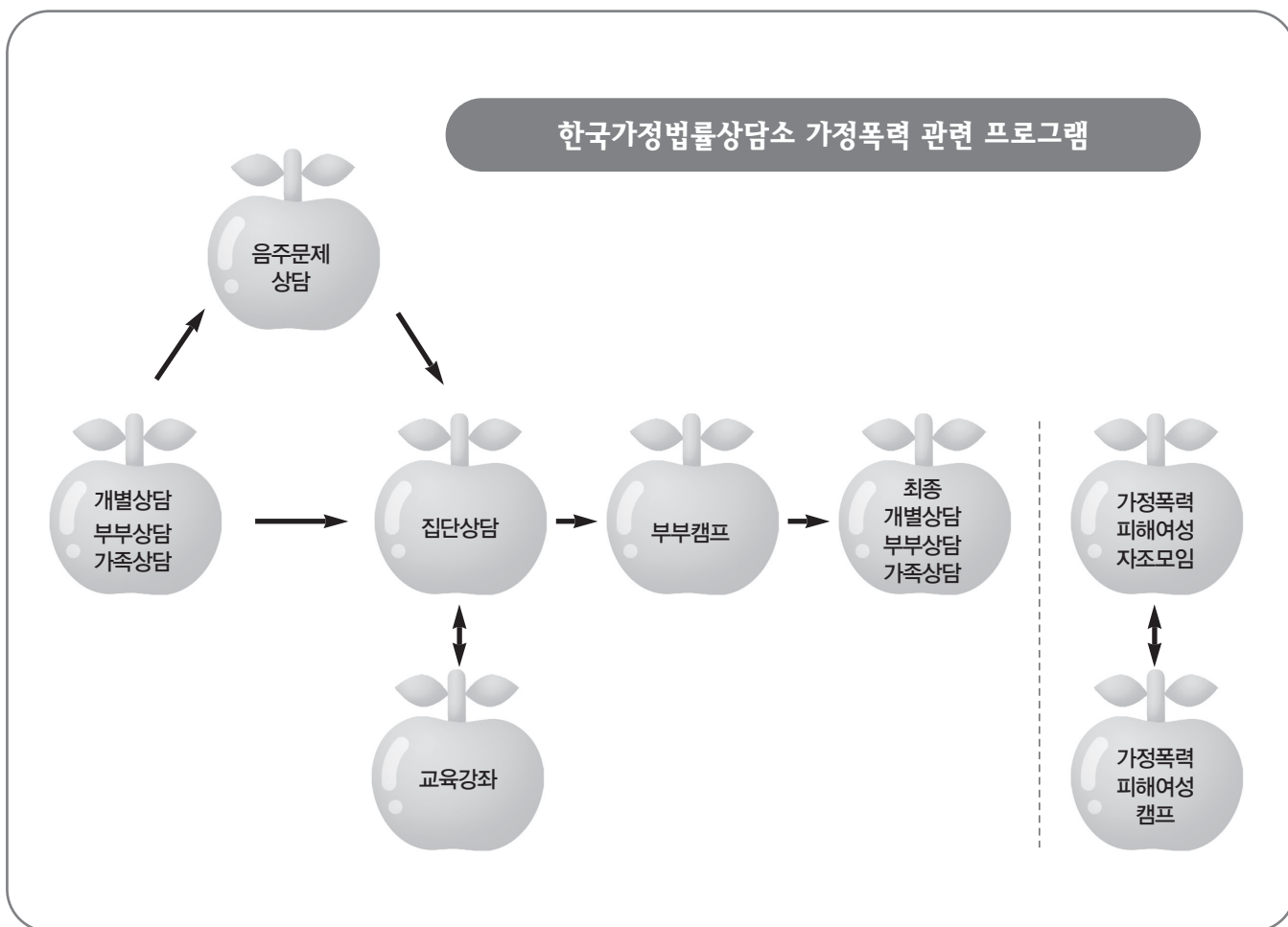
2017. 1. 5. ~ 2017. 7. 24.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기동창으로 결혼한 지 31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녀 1남(31세, 30세, 25세)이 있다. 부부는 평소 성격차이와 행위자의 원가족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2016년 1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폰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부터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행위자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도 상당기간 상담에 임하지 않다가 본소의 연락을 수차례 받고서야 상담에 임하여 본소에서는 법원에 보호처분 기간 연장 의견을 제시하였고 6개월 연장 결정을 받게 되었다.

초상담에서 피해자는 행위자가 부모와 형제를 우선시하고 처와 자녀들에게는 소홀했다는 것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는데, 행위자가 그러한 생각으로 결혼생활을 하다 보니 시가에 보내는 생활비 문제 등에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행위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가족들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시집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부부가 초등학교 동기동창이다 보니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막말을 쉽게 하여 갈등이 촉발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부부 별도의 상담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담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과거사를 반복 거론하지 말 것을, 행위자에게는 갈등상황 시 감정조절 및 평상심을 유지할 것을 과제로 부과하고 실천을 당부하였다. 행위자는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피해자에게 양보하고 살겠다고 다짐하였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는 등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종결상담 시, 피해자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다만 상담이 종결된 후에도 그러한 태도가 유지될지 확신하지 못하고 염려하였다. 행위자는 폭력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로 상담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피해자와 충돌이 예상되면 time-out 등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고 감정도 조절하였다면서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사건번호 2016버1***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9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1회, 음주문제상담 6회,
집단상담 9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2회
등 총 29회 실시

상담기간

2017. 1. 23. ~ 2017. 7. 26.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 이혼 후 재혼한 부부인데 3년 전 성격차이로 이혼하였다가 갈등을 겪는 부분에 대하여 노력하기로 하고 재결합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부부는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살았고, 피해자가 행위자 친

구의 동생으로 결혼 전부터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2016년 6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와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말대꾸를 하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데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 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부부는 재결합 이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마음을 가지고 비교적 부부생활을 잘 해왔다고 한다. 맞벌이 부부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배우자를 인생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여 큰 갈등요인은 없었으나 행위자의 욕하는 기질이 부부가 충돌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년 결혼생활 중 행위자의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사건 이후 바로 행위자가 사과하고 화해하였으며 부부가 취미생활이나 모임을 같이하는 등 업무시간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

행위자는 초상담시 본인에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굳이 6개월씩이나 상담을 받아야 하느냐고 불만을 나타냈지만,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였고, 부부관계를 점검하고 서로의 개선점을 찾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상담 목표로 정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가부장성과 분노조절 문제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면서도 상담기간에 대한 부담감을 표출하였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폭력은 재발하지 않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상담을 받으며 감정조절을 잘하게 되었고 이해심이 넓어졌다고 그 변화를 인정하였는데, 과거 행위자의 감정조절능력을 50점으로 평가한다면 상담 종결 시점에는 90점 이상이라고 하였다. 행위자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부부갈등을 해결할 역량을 강화하여 향후 폭력 재발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인터넷상담



저는 인터넷으로 가입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유출된 개인정보에 제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금융감독원에서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말하며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중국 범죄조직에서 인출해가려는 시도가 있었으니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제 통장의 돈을 모두 입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고 지시하는 대로 제 통장의 돈을 모두 계좌이체 시킨 후에야 제가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전화번호를 바꾸었지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 항상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A

기존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주민등록번호오류의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으나, 2017. 5. 30.부터는 신설된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7조의5에 따라 주민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범죄수사경

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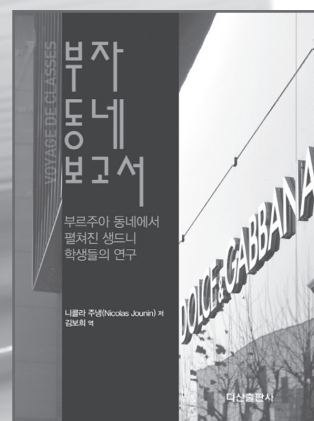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 8. 8.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통해 9건에 대해 변경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이 인용된 주요 사유는 보이스 피싱(파밍 포함)으로 인한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2건 등의 순이었다.

김민선 변호사



부자동네보고서

부르주아 동네에서 펼쳐진 생드니 학생들의 연구



니콜라 주냉 저
김보희 역
2015, 다산출판사

십여 년 전 제주도의 한 콘도, 선배의 친구들 모임에 어찌다 함께 하게 되었다. 선배 부부 만 아는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세 쌍의 부부는 처음 만나는 사이.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모두 중고생 자녀가 있는 연배였고 늦은 결혼으로 얻은 두 살 정도의 아기를 데려온 부부가 한 쌍 있었다. 아이들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주로 엄마들은 자식들 흥을 보았다. 그 중 한 엄마가 고등학생인 아들의 연애이야기를 했다. 같은 서울 시내이긴 하지만 본인들 집에서 꽤 먼 거리에 있는 여학생과 사귀면서 주로 그 동네에 가서 노느라 시간 허비가 많다는 내용이었다. 이 이야기 끝에 그 중 가장 젊은 엄마였던 두 살짜리 아기의 엄마인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 * 이라니, 하필 그 동네라서 참 속상하시겠어요.” 대략 이런 내용으로 사는 지역을 문제 삼는 것이었다. 모두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만 못들은 척 하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확인이라도 하듯이 두, 세 번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고 역시 반응은 없었다. 이 해프닝은 이야기를 다른 주제로 넘기면서 마무리되었지만 나는 너무 놀라웠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하는구나, 그리고 거리낌 없이 그 생각을 내뱉는구나하는 점에서 그랬다. 그리고 점점 알게 되었다. 생각한 것을 그대로 내뱉는 것은 어느 정도 교양의 문제일 뿐이고, 실제 우리는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동서고금 인간사는 참으로 비슷비슷하니 사람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 존재인가 싶기도 하다. 여기 프랑스의 경우도 그러하다.

파리 생드니대학(파리 8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니콜라 주냉은 자신의 학생들과 부자동네를 관찰하고 보고서를 쓰는 수업을 진행했다. 파리 북쪽에 위치한 생드니는 ‘프랑스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이다. 이곳에 사는 백여 명의 학생들이 지하철

30분 거리에 있는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로 향했다. 파리 8구에 위치한 세 곳의 부르주아 거리에서 학생들은 연구 조사를 시작했다. 이제 막 사회학을 배우기 시작한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것과 다른 독특한 관습과 관점을 가진 이 새롭고 낯선 세계에 익숙해져야 했다. 생드니에서 온 학생들은 다양한 일들을 겪는다. 그들은 몇 번의 결심과 도전 끝에 호화로운 호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관찰하고(이와 함께 부적절한 손님 취급을 받았다), 명품 매장 안에 앉아 그들의 조직체계를 기록하며(곧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부르주아 마담’들에게 14유로짜리 밀푼유 먹는 법을 배우고,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상류층 클럽에 가보며, 상류사회 인명록 ‘보탕몽댕’과 그 사회의 결혼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 이 비슷한 관습(?)이 우리 사회에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 고급 대저택에서 프랑스 곳곳에 성을 소유하고 있는 가문 출신 인사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들이 도착한 부르주아 거리에 익숙해지기 위해 **낯섬을 길들여야** 했으며, 동시에 그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상기시키는 여러 모욕들을 견뎌야 했다.

익명성과 소심함을 유지한 채 시작했던 첫 발걸음부터, 면대면으로 조사를 벌이던 순간까지, 이 책은 지배계층의 사회를 연구하며 펼쳐진 크고 작은 전투들을 신선하고 유쾌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상위’에 있는 자들이 ‘하위’에 있는 자들을 관찰하고 조사하던 익숙한 연구의 방향을 뒤집어보는 것 - 이것이 관례적인 사회학의 방법론이었음을 이 책에서 새롭게 깨달았다 - 이것이야말로 이 책이 던지고 있는 핵심적인 관점이다.

이 숙 현 편집부장

결혼과 인생(178)



엘리자의 내일

감독 크리스티안 문주

출연 애드리언 티티에니, 마리아 빅토리아 드래거스, 리아 버그나



1989년, 25년 동안 루마니아를 지배했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세스쿠가 체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에 의해 쫓겨나고 처형당했다. 루마니아의 민주화는 막 시작되는 듯했지만, 곧장 차우세스쿠의 측근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절망했다. 의사 로메오(애드리언 티티에니)는 바로 그 시기 반정부 활동을 하던 청년이었고, 자신과 같은 신념을 가진 이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배반했다. 그는 주저앉아야 했고, 함께 민주화운동을 했던 병약한 아내 마그다(리아 버그나)와 함께 속절없이 늙어가는 중이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총명한 딸 엘리자(마리아 빅토리아 드래거스)다. 딸이 영국 케

임브리지 대학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로메오의 가장 강렬한 욕망이다. 유학은 거의 확정됐고, 남은 것은 삼 일에 걸친 최종 졸업시험뿐이다. 평균 9점을 받으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 엘리자의 그동안 성적 평균이 9.6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통과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졸업 시험 전날, 엘리자는 아침 등 곳을 훑는 대로에서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강하게 저항하면서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그 과정에서 오른쪽 팔목을 빼었고 정신적인 충격 또한 컸다. 결국 다음날, 첫 번째 시험에서 엘리자는 마지막 두 문제를 풀지 못했다. 로메오는 이 뜻하지 않은 비극 때문에 엘리자가 남은 시험을 망치고 거의 확정된 유학길이 막히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다가, 해서는 안 될 거래를 시도한다.

아버지가 주문처럼 되뇌는 말, “넌 여길 떠나야 해. 이곳엔 아무 희망이 없어. 다 너를 위해서야.” 할머니가 그에 대꾸하는 말, “여기 남아서 변화를 만들어야지 모두 다 떠나 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아버지는 또 이런 말을 한다. “때로 저들의 무기를 이용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어. 인생에선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이 있다고.” 딸은 답한다. “잘 모르겠어요.” <엘리자의 내일>은 아마도 루마니아를 제외한다면 한국에서 가장 절실하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영화일지도 모르겠다. 낯아빠진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망, 구세대



를 전부 뒤엎으면 젊은 세대가 그 뒤를 이어받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모두를 사로잡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정치의 논리를 빙자한 사리사욕의 횡행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믿음을 꺾어버렸다. 로메오는 자식에게만큼은 이 같은 절망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이곳을 떠나 더 높은 위치를 점하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지라고 독려한다. 그런 보답을 받아 마땅할 만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약간의 '보험'을 위해 작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까? 남들 모두 다 하는데? 기회가 왔을 때 그걸 거절한다면, 나만 착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한다면 결국 나만 손해 보지 않을까? 로메오는 자신이 지난 세월을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한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십 대 딸은,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의 주장을 듣는다.

전작 <4개월, 3주... 그리고 2일>과 <신의 소녀들>로 격찬 받았던 크리스티안 문주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불안과 도덕적 긴장을 대단히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연출자다. 그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 한 가족을 통해, 그리고 거의 매 신마다 로메오가 점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거슬

리게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를 통해 우리의 도덕적 의무와 양심에 대해 질문한다. 쉬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아버지의 설교에 맞서는 딸의 침묵. 갑자기 창문에 날아든 돌멩이 이후로 매일 아침 정체를 알 수 없는 범인이 로메오에게 가하는 '별'은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로메오는 이유도 목적도 알지 못하는 이 같은 처벌 앞에서 무력하게 저항해보지만 극도의 불안만이 그의 심장을 뒤덮는다. 만약에... 어쩌면... 이라는 가정이 무기력해지는 순간, 그는 스스로의 인생을, 또 타인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 딸이 마지막 시험을 치를 때, 로메오 역시 자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작은' 탈선들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만 한다. 자신이 맞서 싸웠던 이들과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린 자신을 직시하고, 오히려 딸에게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건 시험을 치러야 한다. 아마도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시험을. <엘리자의 내일>의 원제는 '바칼로레아', 즉 '졸업 시험'이라는 뜻이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상·담·소·소·식



본소, 유체인도 등 기획소송 진행위한 변호사단 구성

본소는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27다 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의 제사주재자 결정 및 이에 따른 유체인도 등에 관해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관한 기획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 판례에서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제사주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판례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천명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호주제를 폐지하고 핵가족 중심의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시행하며 혼인 신고 시 부부간의 협의에 의해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등 양성평등에 입각한 법제를 구축

해온 우리사회의 법질서의 변화의 흐름과도 상충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폐지된 호주제처럼 또 다시 남성과 여성, 아들과 딸, 장남과 다른 자녀들과의 차별의식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어 우리 사회의 기본 이념 및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판결로 판단된다. 이에 본소에서는 유체인도 등에 관한 상담 결과 이에 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변경을 위해 변호사단을 구성하였고, 동 사건은 현재 1심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2017가합 1***).

본 사건의 상담소 측 변호사는 다음과 같다.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이명숙(나우리 법률사무소), 배인구(법무법인 로고스), 천정환(법무법인 현정), 김상훈(법무법인 바른), 김민선·황현정(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7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 2018년도 사업계획 등 검토

상담소의 2017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가 지난 11월 15일 열렸다. 김춘봉, 윤후정, 박양덕, 김의재, 조대연, 김영옥, 김명순, 박배희 이사 및 최문원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차명희 이사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개회, 전회 회의록 낭독, 안건토의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토의에서는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관련사진 2면)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자문회의 개최

본소에서는 지난 11월 9일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본소의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7년 본소에서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전문가인 김희진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이서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장, 정운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객원교수가 참석하였고, 본소에서는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과 차연실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삼성생명, 본소에 디퓨저 기증

지난 11월 6일 삼성생명기업임직원들이 봉사활동으로 만

든 디퓨저(방향제) 약 1000개를 본소에 기증하였다. 상담소에서는 이날 받은 디퓨저들을 비혼모 시설, 노숙인 시설 등의 이용자를 비롯하여 본부 및 전국 지부 방문 내담자 등 소외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및 실무종사자 교육 실시

본소에서는 11월 16일 서울시와 함께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및 실무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상담소 강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15개의 시설에서 노숙인 시설이용자 및 시설종사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제도(본소 정연이, 전규선 상담위원), 신용회복 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이현주 심사역),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제도(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서 주거복지 마이홈센터, 박은정 차장), 건강보험관련 제도(국민건강보험공단, 최윤정 과장)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강의가 끝난 후에 원하는 참가자들은 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청, 명의도용, 핸드폰 미납요금, 이혼 등의 다양한 법률 상담과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관련 상담, 신용회복절차 및 건강보험료 미납 등의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것에 매우 만족해하였다. (관련사진 2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법률구조체험교육

본소에서는 11월 12일 숙명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교사(총36명) 대상으로 『법률구조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법률구조제도와 가족법개정운동에서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주도적인 역할 및 그 의미’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본소가 한국사회의 법의식 함양과 양성평등, 인권의식 개선에 기여한 바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또한 ‘범죄의 시작부터 끝까지-형사소송절차’에 대한 강의 후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역할 등을 맡아 형사모의재판 등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어려운 법률용어와 인권 등에 대한 내용을 생활 속의 법률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고, 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관련사진 2면)

본소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 교육부에서는 매달 넷째 목요일, 3시~5시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을 초청하여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무료로 진행하는데 지난 11월 30일에는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강사는 정신적 성숙은 상대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면서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도,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과 가치를 존중하는 능력이 곧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설명하며 타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마음부터 읽는 연습이 필요하며 관계하에 타인의 마음을 읽는 성숙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60여명이 참석하였고 부부가 서로의 감정만 앞세우기 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며 어루만지려는 노력이 있어야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올해 마지막 강의는 오는 12월28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상담”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법교육

11. 1. 강서자활지원센터 : 가족법 및 파산·면책 강의
- 조은경 상담위원

11. 13. 전북대아동복지학 : 가족법 강의
- 조경애 상담위원
11. 21. 정동교회 베엘대학 : 가족법 강의
- 곽배희 소장님
11. 27. 강서자활지원센터
: 가족법 및 파산·면책 강의
- 정연이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박소연, 정다혜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문득현, 김동규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1월 10일 가족법 학회에 참석하였고, 13일에는 전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법 강의를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1월 10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주최 “가정폭력범죄의 현실과 대응방안” 학술행사에서 토론발표를 하였으며, 16일에는 서울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였고, 22일에는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다. 29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 심의를 하였다.

곽배희 소장, 가족법 강의

본소 곽배희 소장은 11월 21일 한성교회 부설 노인 대상 강좌인 베젤대학에서 150여명을 대상으로 상속과 유언을 중심으로 한 개정 가족법을 강의했다.

고맙습니다

2017년 11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권지연,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한정희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영주, 김지후, 김진아, 김태주, 김형석,
박소영, 박수열, 박은정, 송명호, 윤원섭, 이지원,
이혜민, 임주영, 정영주, 진보라, 홍수아,
황미옥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미옥, 방선영, 이승주, 장주용, 장철진, 전성배,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원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임채룡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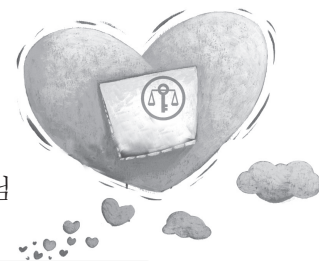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남서연, 마운지, 맹현규, 손지희, 이민주, 정윤성,
강수지, 김현지, 김혜림, 김혜정, 박민경, 배준모,
이계복, 이윤복, 이희현, 정세욱, 최민서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이승훈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지·부·소·식

강릉지부

11월 8일 강릉지부 개소 2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2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이혼 전 부부 대상 자녀양육 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8회(167명) 실시하였다.

구리지부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 및 형사조정을 7회 실시하였다. 11월 21일 상담소 강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실제’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였다. 이경숙, 김효경, 정이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11월 1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자녀양육안내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22일 군산나운초등학교에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관련 출장상담과 조정을 실시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및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1월 11일, 25일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주말프로그램 ‘협력하는 부모’ 교육을 실시하였다. 윤용원, 김인현, 안혜림, 김재철, 박기대, 이석화, 곽경화, 정홍옥, 나만수, 상무균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10회, 광주시법원 4회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을 6회 실시하였다. 성남시정보문화센터, 성남중앙도서관, 관내 동주민센터 등에 상담소 홍보물을 10회 배포하였다. 30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홍재, 손수정, 송지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협의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면담을 9회 실시하였다. 부설 보라상담원에서 경찰동행 가정폭력피해자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하였다. 강은혜, 구민혜, 김선철, 김진영, 김현명, 박지훈, 서정식, 이정호, 이홍재, 임용호, 전태우, 정원진, 한두환, 홍성민, 황미옥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11월 17일~18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과 이혼 위기 관계 회복을 위한 1박 2일 부부캠프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실시하였다.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교육을 4회 실시하였다.

익산지부

11월 8일 이사회,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22일 익산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출장상담을 실시하였다.

중구지부

서울가정법원위탁 가정폭력행위자 22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11월 25일 가정폭력행위자 25명을 대상으로 “잘못 택한 걸까 잘못 대한 걸까” 주제로 남산서울유스호스텔에서 캠프를 실시하였다. 박진석, 장상현, 이재경, 김창건, 정형준, 홍지혜, 임유정, 백준익, 황은하, 고승현, 박수열, 이수희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을 1회, 가사조정을 1회 실시하였다. 11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28일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검찰청, 전주시청 등에 가정상담지 등으로 홍보를 하였다. 매주 토요일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정아람, 진휘원, 김은진, 임지연, 나득주, 박병건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2회, 창원지방법검찰청 형사조정을 2회 실시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4회 실시하였다. 11월 15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고정향, 강재현, 전철우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춘천지부

춘천시지원 생활법률무료강좌를 3회 실시하였다. 가정폭력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 2017년 강원도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부부관계증진 집단 프로그램을 2회 실시하였다.



2017년 10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7년 10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0,673건으로 본부가 5,812건, 지부가 4,861건이었다.

본부는 5,351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354건·소장 등 서류작성 71건·소송구조 36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4,140건·화해조정 669건·소장 등 서류작성 23건·소송구조 29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351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7년 9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1.1%→1.3%), 이혼(19.6%→20.1%), 위자료·재산분할(10.9%→11.2%), 면접교섭권(2.7%→3.0%), 친생자존부(2.3%→2.5%), 혼인무효·취소(0.7%→0.9%), 이혼무효·취소(0.2%→0.4%), 부양(1.2%→1.4%), 친양자(0.6%→0.9%), 개명(0.4%→0.7%), 성년후견(1.2%→1.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0.5%→0.7%),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성폭행(0.0%→0.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351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02건(16.9%), 전화상담 4,041건(75.5%), 통신 및 인터넷상담 407건(7.6%),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7년 11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7,014			
법률상담 (6,312)			
면접	전화	통신	지상
1,132	4,903	276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507		122	73

* 2017/11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77,861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5,812	902	4,041	407		지상 1	5,351	354	71	36
강릉 (033) 652-9555	62	45	14				59	1		2
구리·남양주 (031) 551-9976	210	57	27				84	124		2
군산 (063) 442-1560	123	57	34				91	29		3
대구 (053) 745-4501	501	232	111	6		출장 76	425	72	2	2
대전 (042) 520-5258	183	32	148				180		3	
동해 (033) 535-0188	112	39	70			출장 2	111			1
목포 (061) 273-2514	161		160				160			1
부산 (032) 667-2314	302	56	156				212	89		1
성남 (031) 707-6661	243	161	40	1		출장 14	216	23	4	
수원 (031) 243-4600	411	114	149	5		출장 45	313	96		2
순천 (061) 753-9910	167	37	125				162	5		
충구 (02)2238-6554	280	179	101				280			
안동 (054) 856-4200	107	18	69				87	18	1	1
익산 (063) 851-5113	163	32	125			출장 4	161		1	1
인천 (032) 865-1120	278	149	119				268	5		5
전주 (063) 244-2930	184	99	59	20	4		182			2
정읍 (063) 535-3705	89	46	40				86	1	2	
진주 (055) 746-7975	145	42	47				89	52		4
창원·마산 (055) 261-0280	304	173	97	1			271	29	2	2
청주 (043) 257-0088	216	74	50				124	87	5	
춘천 (033) 257-4688	210	24	22			출장 164	210			
태백 (033) 554-4004	71	24	26			출장 21	71			
평택·안성 (031) 611-4251	150	18	69			출장 30	117	30	3	
제천 (043) 644-5690	103	30	73				103			
포항 (054) 283-7555	86	13	65				78	8		
지부총상담	4,861	1,751	1,996	33	4	출장 356	4,140	669	23	29
총 상담	10,673	2,653	6,037	440	4	출장 356 지상 1	94,91	1,023	94	65

** 2017/10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85,434건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도박으로 가출을 반복하며 전 재산을 탕진한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7-144

담당 : 김미옥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8세)와 피고(남, 61세)는 1990년 5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고 가출을 반복하였다. 원고는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며 피고의 습관을 고쳐보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하였지만 피고의 도박습관은 고쳐지지 않았다. 피고가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갚지 못하여 원고는 집과 운영하던 사업장을 처분하였고 급기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는 최근에도 도박으로 인한 가출을 반복하다가 2016년 10월경 가출을 한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7. 8. 2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부에게서
모로 양육자 변경 후 양육비 조정**

법률구조 2017-178

담당 : 배삼희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35세)과 상대방(남, 35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2세)을 두었으나, 2014년 9월경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싶었지만, 매일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직장의 특성상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할 수 없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였다. 하지만 이후 2015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만나러 갔을 때 사건본인은 위생 상태가 엉망일 뿐만 아니라 낡고 구멍 난 운동화에 기장이 짧아진 옷을 입고 시력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있는 등 상대방으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을 설득하여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조정도 받았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9.21.)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17년 9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말일 금 450,000원을 지급한다.
2. 청구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이전의 과거양육비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3.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투병생활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빚을 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191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74세)은 1983년 이혼 후 탄광에서 일하다가 기관지 질병으로 3년 만에 퇴직하였다. 이후에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빚을 지기 시작하였다. 1996년경 재혼 후에도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던 신청인은 2009년경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기소가 되었고, 두 번의 재판을 거쳐 무죄선고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처분하여야 했다. 이후에도 신청인은 대장암 등 투병생활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다시 빚을 지게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 배우자와도 이혼을 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비 이외 다른 소득은 없으며 대장암, 척추디스크, 백내장 등의 질병으로 계속해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신청인의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9.19.)

채무자를 면책한다.

정신병으로 딸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아내에 대한 이혼 결정

법률구조 2017-197

담당 : 임소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3세)와 피고(여, 61세)는 1979년 10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다, 2004년경부터 피고가 정신이상증세를 보였다. 병원 치료에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으며 계속된 재발로 3년에 한 번씩 입원을 반복하다 최근에는 매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피고의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원고는 하던 일도 못

하게 되었고, 지인들도 만나지도 못했다. 피고로 인하여 원고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우울증 및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는 딸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고 ‘딸을 재물로 삼겠다’,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죽어야 된다’며 생명의 위협을 가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춘천지방법원 2017. 8. 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도박 중독으로 아내를 개인회생절차까지 밟게 만든 남편과의 이혼 결정

법률구조 2016-469

담당 : 이승석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2세)와 피고(남, 37세)는 2012년 3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4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사업상 필요하다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대출을 받아주었다. 또한 2013년경 원고가 임신으로 퇴사해 퇴직금을 받게 되자, 자동차 딜러인 피고는 급히 차를 매입하여야 한다며 퇴직금을 모두 가져갔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의 부모님에게까지 돈을 빌렸다.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원고 명의의 통장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이 일로 그동안 피고에게 지급한 원고 명의의 대출금이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2016년 2월경 피고가 원고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사채를 쓰고 이를 갚지 않아 원고의 월급 통장이 지급정지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결국 원고는 현재 개인회생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인천가정법원 2017.8.1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2017년 9월 30일까지 지

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원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피고는 매주 1회 당일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는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 장소, 방법을 협의하여 정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고령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빚을 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6-538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71세)과 신청인의 배우자(남, 82세)는 고령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카드 돌려막기까지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이 1997년 경 부터 거주하던 주택은 2016년 2월 경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신청인과 배우자는 경매절차 종료 후 받게 된 잉여금으로 현재 거주지의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연금과 자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치매와 당뇨, 섬유폐질환을 앓고 있어 그를 돌보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의 낮은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6.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20년 전 연락 두절된 남편과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7-37

담당 : 백신옥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3세)와 피고(남, 66세)는 1983년 8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도박으로 외박이 잦고,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일용직 노동도 꾸준히 하지 못하여 원고가 전적으로 가정을 부양해야 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폭력성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당시 초등학교이었던 딸까지 폭행 하였다. 20년 전 피고는 제주도 본가에 내려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제주지방법원 2017.9.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0년 전 불법 게임장 단속을 피해 도망친 이후 연락두절 된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7-63

담당 : 김지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3세)와 피고(남, 49세)는 2007년 2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여, 11세)을 두었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피고 대신 당시 임신 중이었던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2007년경 사건본인 백일잔치 이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7. 10. 2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업실패로 인해 발생한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67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6세)은 2003년 운수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업종을 변경하여 소형디지털기기 전자제품 유통 사업을 하던 중, 2009년경 네비게이션 업체에 현금 1억 원을 사기 당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불량 네비게이션 매입으로 6,500만 원의 추가 손실을 본 신청인의 사업은 네비게이션 사업의 하향세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신

청인은 직원들의 월급, 사무실 및 매장 임대료 등을 부담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늘어난 대출금이 3억 원에 이르게 되었지만 신청인의 사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2013년 1월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신청인은 이를 변제하고자 보험설계사로 취직하였으나, 과거의 채무로 인해 압류가 들어와 직장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이후에도 신청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매장관리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지만,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이 악화되어 대동맥 박리로 인한 대수술을 받게 되면서 장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미성년 자녀 2명까지 양육하고 있는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10. 19.)

채무자를 면책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 서신 및 전화·지상·순회·인터넷·출장·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있다.

화해조정과 소장작성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 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소송구조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소에서는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소송구조는 상담소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그리고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사소송 전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 민사, 형사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다문화가정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외국변호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영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무료 지원

개인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의 법적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중합민원실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중합민원실에서 무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혼 후 생계가 어려워져 빚을 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79

담당 : 박배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1세)은 어린 시절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식당 주방 일을 하며 생활하던 중 결혼을 하였다. 신청인은 약 23년의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2002년경 이혼을 하였다. 이혼 후 신청인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생계를 유지하고자 신발 노점판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신발을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 채무만 남은 채로, 운영에 실패하고 말았다. 장사를 접은 신청인은 식당 주방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지만 생계유지가 여의치 않아 카드 돌려막기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고혈압, 만성 위염 등의 질병으로 2010년경 부터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2011년 11월부터 동생의 거처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동생의 도움을 받고 있다. 신청인은 두 자녀들과도 연락이 장기간 두절되어 현재 동거 중인 동생 외에는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9. 8.)

채무자를 면책한다.

폭력으로 인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7-88

담당 : 강호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2세)와 피고(남, 78세)는 1973년 1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폭언, 폭행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였다. 2013년경부터는 피고가 폐지 등 고물을 집안에 모

아두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4년경 따로 거주지를 마련하여 별거하였다. 2016년 5월경 원고 피고의 집으로 들어갔으나 2016년 7월경 다시 별거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7년 2월경 피고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는 2017년 2월경 접근금지 및 통신제한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그 이후 다시 원고를 찾아가 폭언을 하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2017. 10.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배우자로 인해 빚을 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141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39세)은 2013년 경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였으며, 신청인의 배우자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화장품 사업 등을 운영하였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집안의 경제권을 오로지 혼자 갖고 관리하였고,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업자금,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큰 채무를 안게 되었지만 신청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은 전부 잘못되어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7년 2월경 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원래 살던 거주지에서 쫓겨나오다시피 나오게 되었고, 두 자녀의 양육비와 월세, 생활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가입했던 보험까지 모두 해약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다행히 영구임대주택에 선정을 받아 2017년 10월부터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신청인의 소득으로는 배우자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

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10. 26.)

채무자를 면책한다.

**잘못된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모녀관계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함**

법률구조 2017-168

담당 : 윤원섭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내용 : 원고(여, 52세)는 피고(여, 80세)의 친자녀이다. 피고는 원고의 친부와 사실혼 관계에서 원고를 출산하였다. 원고의 친부는 원고를 자신과 피고 사이의 친자녀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출생신고 시 모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관계로 현재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 모란에는 피고의 성명과 성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외의 사항은 공란으로 남아있고,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원고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고령의 피고가 사망하게 되면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거주지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7. 9. 6.)

1.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상담은 이렇게 ...

전화, 인터넷, 서신 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열려 있으나,
문제의 특성상 되도록이면 상담자와 직접
면접상담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면접상담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5시(접수 오후 4시까지)
- 야간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5시
- * 사전 예약 필수

인터넷상담

- <http://www.lawhome.or.kr>
- <http://www.miznet.daum.net>(가정법률)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 평일 : 오전 9시~오후 5시

2018년 초·중·고등교사직무연수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전문성 향상과정-교과지도)
- ▶ 연수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가길 14)
- ▶ 대상 및 인원 : 서울 및 전국 초중고 교원과 교육전문직 종사자 40명
- ▶ 연수 일정 : 2018년 1월 9일 (화) ~ 1월 11일 (목)
10시 ~ 16시 30분 (예정)
- ▶ 이수 시간 : 15시간 (1학점)
- ▶ 평가 : 없음 (연수과정 80% 이상- 12 시간- 출석시 이수증 발급)
- ▶ 신청방법 : 신청서를 FAX (02- 780-0485) 로 전송
또는 이메일 (edu@lawhome.or.kr) 로 전송
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 신청기간 : 2017년 11월 1일 ~ 마감시 까지
(신청 전 전화로 확인 요망, ☎ 02-782-3601)
- ▶ 과 정 :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약혼·혼인·사실혼에 관한 법률
 - 이혼·친권에 관한 법률
 - 친자·양자·친양자에 관한 법률
 - 부양에 관한 법률, 성년 후견에 관한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임대차에 관한 법률
 -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특례법, 폭력예방교육 등 강의

등지교실

비폭력대화법을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캐서린 한 대표, 한승희 강사(한국비폭력대화센터)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12월 14일(목)	축하와 감사로 한해를 마무리하기

2017년 12월 교육강좌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12월 11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이야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 ▶ 일시 : 2017년 2월~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12월 28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상담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2018년 초·중·고등교사직무연수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
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이야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등지고실

비폭력대화법을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강좌

